CalWORKs 및 CALFRESH 변경 사항 신고

사례 이름:	
사례 번호:	
담당자 번호:	

귀하는 ☐ CalWORKs ☐ CalFresh를 수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. 귀 가구의 월 총소득이 귀하의 현재 소득 신고 기준치(INCOME REPORTING THRESHOLD, IRT)를 초과하는 경우는 언제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혜택 종류	CalWORKs	CalFresh
가족 수		
귀하의 현재 소득		
귀하의 IRT:		

참고 사항: CalFresh에 대한 귀하의 IRT(소득신고기준치) 금액을 "N/A" 이라고 기재한 경우 귀하의 다음 SAR 7 또는 수혜 자격 갱신 중 먼저되는 날짜까지 CalFresh에 대한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CalWORKs에 대해 IRT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귀하의 총소득이 그 IRT 금CalFresh에 대한 귀하의 IRT(소득신고기준치) 금액을 "N/A"이라고 기재한 경우 귀하의 다음 SAR 7 또는 수혜자격 갱신 중 먼저되는 날짜까지 CalFresh에 대한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CalWORKs에 대해 IRT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귀하의 총소득이 그 IRT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<u>신고 방법?</u>

귀하의 총소득이 위에 기재된 IRT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**10일 이내에** 카운티에 신고해야 합니다. 카운티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.

<u>"월 총소득"의 의미:</u>

- ➪ (근로 소득과 **불로 소득** 포함) 귀하의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.
- ➪ 일체의 공제가 이루어지기 *"전"*의 금액을 의미합니다. (공제의 예: 각종 세금, 사회 복지 또는 기타 퇴직 기여금, 압류 등)

<u>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?</u>

- ➪ IRT 초과 소득에 따라 귀하의 수령 액수가 감액 또는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.
- ➪ 귀하의 소득이 변경되거나 누군가 귀하 가구로 이사 들어오거나 이사 나가는 경우 IRT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➪ 카운티는 귀하의 IRT가 변동될 때 마다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.
- ➪ 또한 귀하의 연례 재결정/재인증(redetermination/recertification, RD/RC) 중, 이미 신고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RD/RC 양식에서 물어 보는 모든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<u>미신고 사항에 대한 처벌</u>

귀하의 소득이 귀하 가구의 IRT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받게될 수 있습니다.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근거로 받게되는 일체 추가 수당액은 **반드시** 상환해야 합니다. 수당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되며, 그로 인해 형사 기소될 수 있습니다.

귀하는 CalWORKs를 수혜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, 발생일로부터 <u>10일 이내</u>에 <u>반드시</u>이를 신고해야 합니다.

1. 누군가 귀하 가구로 이사 들어오거나 이사 나가는 경우.
2. 자택에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조건 위반자가 귀 가구로 이사를 들어오거나 현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.
3. 법망을 피해 도주 중인 사람이 귀하 가구로 들어오거나 현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.
4. 귀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.

CalFresh 수혜자인 경우 <u>반드시</u> 다음 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.

- 부양 가족이 없고 신체가 온전한 성인(Able Bodied Adult Without Dependents, ABAWD)인 경우, 귀하의 근로 또는 교육훈련 시간이 주당 20시간 또는 월 80시간 *미만*으로 줄어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

<u>자발적 신고 정보</u>

또한 언제든 카운티에 자발적으로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됩니다. *일부 변경 사항 신고의 경우 수당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.* 예를 들어:

- 가구 구성원 중 누군가 임신한 경우.
- 현금 보조금 수령자 중 누군가 다음과 같은 특수 지원을 요하는 경우: 임신, 의사가 처방한 특수 식이요법, 집안 내 비상 상황 등.
- CalFresh의 경우,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구성원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난 경우.